

부산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566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

## 전 문

원 고 A 종친회

피 고 B

변론 종결 2020. 4. 21

판결 선고 2020. 5.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 제1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위 토지는 2002. 3. 5. 낙찰을 원인으로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 18. D에게 2009. 1.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5. 7. 17.에는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과 D는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미등기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가짐을 전제로, 2002. 3. 5.부터 2015. 6. 25.까지 기간 동안의 지료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9. 10. 1.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0년 이후 월 임료는 61만 원 가량이다.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 4.부터 2015. 6. 4.까지 기간 동안의 지료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65만 원(= 61만 원 x 65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초 2006. 8. 4.부터의 지료를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자 2019. 12. 5.자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그때부터 역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0년 이내의 지료만을 청구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사경 화

별지